

# 지방자치단체 공동 출연기관인 한국지방세연구원의 정상화 촉구 건의안

의안 번호	397
----------	-----

제 안 년 월 일 :2022년 12월 19일

제 안 자 :행정자치위원장

## 1. 주문

- 한국지방세연구원은 전국 모든 지방자치단체의 출연으로 운영되는 출연기관인바, 이에 대한 지도·감독 등에 관하여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상호 합의하여 정할 수 있도록 출연 규모 등 운영방식의 개선을 촉구함.

## 2. 제안이유

-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이하 “ 「지방출자출연법」 ”)은 지방자치단체가 출자하거나 출연하여 설립한 기관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음.
- ‘한국지방세연구원’은 「지방세기본법」에 따라 2011년에 설립되어 지방자치단체 지방세 세입의 일정률을 출연하여 운영되는 출연기관이며, 설립 후 지난 12년간 지방자치단체의 출연 규모는 1,016억원을 초과하고 있음.
- 그러나, 한국지방세연구원은 출연기관의 일반적 법인 형태인 재단법인이 아닌, 기타법인으로 등기하여 「지방출자출연법」 적용이 배제되고 있고, 행정안전부 임원을 당연직 이사·감사로 정관에 규정하고 있는 등 그 운영을 행정안전부가 주관하고 있는바, 실제 출연자인 지방자치단체는 출연금 규모 산정 뿐 아니라 어떠한 지도·감독 등을 행사할 수 없는 상태임.

- 이에 따라 한국지방세연구원은 목적사업과 무관한 청사 매입에 더하여 매년 잉여금이 발생하여 기금을 적립하는 등 일반적인 출연기관과는 다르게 과도한 초과수입이 발생하고 있음에도 지방자치단체는 연구원 사업 실적에 상관없이 지방세 세입의 일정률을 강제 출연하고 있는 실정임.
- 이에, 서울특별시의회는 지방자치단체의 출연기관인 한국지방세연구원을 「지방출자출연법」에 따른 출연기관으로서 지방자치단체 장이 상호 협의하여 지도·감독 할 수 있도록 재단법인으로의 법인 등기 형태 변경 등 연구원 체질 개선을 촉구함.

###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지방세기본법」 및 같은 법 시행령,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

### 4. 이송처

- 국회, 행정안전부

# 지방자치단체 공동 출연기관인 한국지방세연구원의 정상화 촉구 건의안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이하 “「지방출자출연법」”)은 지방자치단체가 출자하거나 출연하여 설립한 기관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으며, 출자·출연기관에 대한 지도·감독 등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한편, ‘한국지방세연구원’은 「지방세기본법」에서 지방세입 제도의 발전에 필요한 연구·조사·교육 및 이와 관계된 지방자치단체 사업을 위한 지원 등을 위하여 지방자치단체가 출연·운영하는 법인으로 정의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전국 모든 지방자치단체에서는 2011년에 설립된 한국지방세연구원의 운영을 위해 지방세 세입의 일정률을 연구원에 출연하고 있으며, 지난 12년간 출연 규모는 1,016억원에 달하고 있습니다.

※ (서울특별시 20.7%, 211억원 / 25개 자치구 포함 24.6%, 251억원 출연)

문제는, 출연자인 지방자치단체가 적정 출연금 규모에 대한 심사 권한뿐 아니라, 연구원에 대한 지도·감독 권한 또한 갖고 있지 못한 상태에서 매년 지방세 세입의 일정률을 강제로 적용하여 과다하게 출연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이런 불합리한 제도 운영이 가능하게 된 근본적인 원인은,

지방자치단체가 설립한 출연기관, 특히 절대다수의 연구원은 민법상 “재단법인”으로 설립하여 「지방출자출연법」에 따라 출연자의 지도·감독 대상으로 제도화되어 있는 반면,

한국지방세연구원은 “특수법인”, 그 중에서도 ‘기타 분류할 수 없는 법인’에게 부여되는 “기타법인”으로 설립한 데에 원인이 있습니다.

이로 인하여 출연자가 아닌 행정안전부 임원이 당연직 이사·감사가 되어 연구원 운영을 주관하고 있고,

세입에 비례하여 출연금을 산정할 합리적 이유가 없음에도 「지방세기본법 시행령」에서는 지방세 세입의 일정률을 출연하도록 강제 규정하여 출연금이 과다하게 징수됨으로써,

연구원은 잉여금을 적립하여 목적사업과 무관하게 청사를 매입하는가 하면, 청사 매입 후에도 매년 잉여금을 발생시키는 등, 출연기관으로서의 공공성 추구와는 거리가 먼 외형 확대에 치중하는 비정상적인 운영을 계속해 오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출연자가 출연기관을 지도·감독하는 상식의 실현을 위해 다음과 같이 행정안전부의 제도개선 실천을 촉구 건의하는 바입니다.

첫째, 한국지방세연구원이 지방자치단체의 출연기관으로서 「지방출자출연법」 적용 대상이 될 수 있도록, 행정안전부는 연구원 법인 등기 형태를 현행 ‘기타법인’에서 ‘재단법인’으로 변경할 것을 촉구합니다.

둘째, 한국지방세연구원에 대한 상식적인 출연제도 운영을 위하여 「지방세기본법」 제151조 및 제152조의 합리적인 개정을 촉구합니다.

셋째, 행정입법을 통한 출연률 강제 적용 및 출연금 용도 제한 등 불합리한 제도 운영의 근거가 되고 있는 「지방세기본법 시행령」 제94조의 개정을 촉구합니다.

2022년 12월

서울특별시의회 의원 일동